정 관

전 문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모든 질곡과 억압을 철폐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들레장애인야학을 설립하였다. 민들레장애인야학은 장애인 주체가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며,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민들레장애인야학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박탈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체의 창조적 역량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정한 장애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1장 목 적

제 1조 〈명칭〉 본 야학의 명칭은 '민들레장애인야학(野學)'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야학은 일상적인 교육 사업을 통해 장애인 주체의 창조적 역량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해 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정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존재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야학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 4조 〈목표〉 본 야학의 목표는 '한 발 내딛는 생각, 살아있는 배움'으로 한다.

제 5조 〈부설〉 본 야학의 이념을 지향하는 기타 단체 등을 부설로 둘 수 있다.

제 6조 〈사업〉 본 야학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력보완 교육 사업 (검정고시 대비 교육)
2. 문화예술교육 사업
3. 인권 교육 사업
4. 자립생활 교육 사업
5. 기타 본 야학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학사 일정

제 7조 〈학기〉 한 학기의 시작은 매년 2월과 9월로 하며, 그 구체적인 일자는 교사학생회의에서 정한다.

제 8조 〈방학〉 정기 방학은 학기가 끝난 후 4주 이내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서 교사학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교과 이수

제 9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문해 반의 경우 한글/기초국어/기초수학과정, 중검반의 경우는 초등학교과정, 고검반의 경우 중학교과정, 대검반의 경우 고등학교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 〈시간표〉 수업 시간표는 매 학기 초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1조 〈시험〉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회 원

제 12조 〈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회원 가입서에 정회원 가입을 동의한 자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

③ 회비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④ 당연직 회원은 실무자, 학생, 교사로 한다. 단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 13조 〈후원회원〉

①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모든 후원자와 후원 단체를 포괄한다.

② 후원회원은 CMS를 가입하거나 본 단체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14조 〈후원회원의 권리〉

①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제반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제 15조 〈정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무)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ㄱ. 정회원은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니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ㄴ. 정회원은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

③ (자격정지 및 해제) 회비납부의 의무를 3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단 연체된 회비의 50% 완납할 시 자격 일시정지는 취소된다.

제5장 직 제

제 16조 〈직제〉 본 야학은 교장, 선출직운영위원, 사무국장, 교사대표, 총학생회장, 부서장 등을 둔다.

제 17조 〈교장〉

① (선출 및 임기) 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권한 및 직무)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ㄱ. 본 야학을 대표하여 대외 · 대내 사업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ㄴ. 야학사무국 및 야학 부설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③ (권한대행)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교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행한다.

제 18조 〈선출직운영위원〉

① (권한 및 직무) 민들레장애인야학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 19조 〈사무국장〉

① (인선) 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② (권한 및 직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교장을 보좌한다.

③ (부서장)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 공석 시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

제 20조 〈교사대표〉

① (선출 및 임기) 교사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권한 및 직무) 야학의 교사회의를 총괄한다.

③ (권한대행) 교사대표 부재 시 그 역할은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21조 〈총학생회장〉

①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권한 및 직무) 학생회의 모든 자치활동을 총괄하며, 총학생회의를 주관한다.

③ (권한대행) 총학생회장 부재 시 그 역할은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한다.

제 22조 〈부서장〉

① (임명)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교장이 임명한다.

② (권한 및 직무) 부서회의를 주관하며 부서의 고유사업을 집행한다. 그리고 본 야학의 일상 사업을 공동으로 집행한다.

③ (부서원)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 23조 〈성격과 권한〉

① 교장 및 선출직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및 탄핵, 회원의 상·벌,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1년간 집행된 사업보고, 차년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제 24조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사항 발생 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요구할 시 교장이 소집한다.

제 25조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장 및 선출직 운영위원, 감사의 탄핵, 회원의 상·벌,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참석〉

① 총회의 참석자는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③ 후원회원은 참석의 의무가 없으며 단, 참석을 원할 시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 27조 〈지위 및 성격〉

① 운영위원회는 민들레장애인야학의 기획 및 운영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기구로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모든 대내, 대외사업과 재정에 대해 기획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제 28조 〈기능〉

①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모든 대내, 대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② 본 야학의 예산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 29조 〈구성〉

① 각 단위 대표자(교장, 교사대표, 총학생회장, 부설기관장), 선출직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교장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요청 시 사무국장 및 부서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임기를 다하지 못 할 사안이 발생할 시, 신규 운영위원의 경우, 잔여 임기만을 임기로 인정한다.

제 30조〈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교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요청 시 정회원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다. 단 직접 열람만 가능하다.

제 31조〈선출직운영위원〉

① (선출 및 임기) 총회에서 정회원에 한하여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권한 및 직무)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ㄱ. 운영위원회의 때 참석하여 각 부서의 계획과 운영에 함께한다.

ㄴ. 각 부서의 계획과 운영이 본 야학이 지향하는 것과 상반될 시 계획과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

③ (의무)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④ (징계)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ㄱ. 운영위원회의 내 규칙에 위반한 경우

ㄴ. 고유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ㄷ. ㄱ,ㄴ 항의 경우 총회에서 운영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2조〈감사〉

① (선출 및 임기) 총회에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권한 및 직무)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ㄱ. 운영위원회의 때 참관할 수 있다.

ㄴ. 감사의 영역은 재정 감사와 사업 감사로 나뉜다.

ㄷ. 매년 정기총회 전 회계장부와 활동내용을 감사하여 야학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의무) 감사의 결과를 날인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교사회

제 33조 〈기능〉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해 현 교사를 구성원으로 한 교사회의를 둔다.

① 교사회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정한 교사회칙에 따른다.

제9장 총학생회의

제 34조 〈권한과 기능〉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현 학생을 구성원으로 한 총학생회의를 둔다.

① 총학생회의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0장 재학생 규정

제 35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별도의 정해진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을 한다.

제 36조 〈입학 조건〉

①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박탈되고 있는 교육권의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생 연수를 거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입학의 사항은 교육국의 면담을 거쳐, 교사회의에 보고한다.

제 37조 〈제출 서류〉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지카드 사본 1통 (해당자)

② 학생신상 기록카드[1)]

제 38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 39조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학생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 행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에게 자료나 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모든 학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학생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모든 학생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을 가진다.(단,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1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한다.)

⑤ 모든 학생은 교칙과 총학생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장 징계위원회

제 40조 〈지위〉

① 징계위원회는 민들레장애인야학의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회에 발의한다.

제 41조 〈기능〉

① 총회에 의결된 징계사항에 대해 집행권한을 갖는다.

제 42조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요청 시 관계인은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 규칙을 준용한다.

제 4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징계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한다.

제12장 회계 업무 및 운영비 관리

제 44조 〈회계의 구분 등〉 민들레장애인야학의 회계는 각 자치 단위(교사, 학생)에 속하는 자치 단위 회계를 제외한 사업예산 및 자체예산으로 구분되며 이 모든 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해 전체 회계를 관리한다. 전체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 45조 〈회계의 처리〉 민들레장애인야학의 회계처리는 각 자치 단위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자치단위회계를 제외한 회계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가진다.

---

1) 별첨1

제 46조 〈회계연도〉 민들레장애인야학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한다.

제 47조 〈회계결산〉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총회를 통해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 48조 〈운영비의 구분〉

운영비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재무제표에 따른다.

별도의 재무제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마련한다.

제 49조 〈잉여금의 처리〉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장 정관 개정

제 50조 〈입안〉 민들레장애인야학의 모든 자치 단위에서 입안할 수 있다.

제 51조 〈개정〉 총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52조 〈시행〉 개정 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재정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의 경우 정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제 정 : 2008년 2월 29일

1차 개정 : 2008년 6월 25일

2차 개정 : 2008년 9월 5일

3차 개정 : 2010년 3월 정기총회

4차 개정 : 2010년 7월 17일 임시총회

5차 개정 : 2011년 3월 12일

6차 개정 : 2012년 3월 17일

7차 개정 : 2013년 2월 23일

8차 개정 : 2019년 2월 27일